부산광역시

수신자 수신자 참조
(경유)
제목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및 방역수칙 조정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

1. 관련근거
   ○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(2021.2.13.)
   ○ 부산광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변경 고시 제2021-54호(2021.2.13.)
2. 최근 확진자 감소 양상과 계속된 거리두기 체계 진행으로 민생경제 피해누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, **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에서 1.5단계로 하향 조정**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.

   ○ 적용기간 : **2021.2.15.(월) 0시 ~ 2021.2.28.(일) 24시 까지**

?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? 전국 유흥시설에 대한 운영제한 시간(22시) 조정

가. 중점관리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

○ (적용대상) 유흥시설 5종(클럽·룸살롱 등 유흥주점, 콜라텍, 단란주점, 감성주점, 헌팅포차), 홀덤펍 ○ (법적근거)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호 ○ (조치내용) 방역지침 의무화

나. 일반관리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

○ (적용대상) 결혼식장, 장례식장, 목욕장업, 영화관, 공연장, PC방, 오락실·멀티방, 실내체육시설, 실외 겨울스포츠시설, 사설 스포츠시설, 학원(교습소)·직업훈련기관, 독서실·스터디카페, 놀이공원·워터파크, 이·미용업, 백화점·대형마트, 백화점·대형마트 외 종합소매업(300㎡ 이상) ○ (법적근거)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호 ○ (조치내용) 방역지침 의무화 * ‘종교시설’로 허가를 받지 않았으나,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은 기 안내한 「종교 등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방역수칙 가이드라인 정정 안내(2021.1.27.)에 따라 적절한 방역수칙 적용

다.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

○ (적용대상) 리조트, 호텔, 게스트하우스, 농어촌민박 등

○ (법적근거)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호
○ (조치내용) 방역지침 의무화

라. 모임·행사

○ (법적근거)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호
○ (조치내용) 사적 모임 5인 이상 금지, 그 외 모임·행사 단계별 조치기준에 따라 제한 - 직계가족 예외 허용

마. 종교시설

○ (적용대상) 종교시설
○ (법적근거)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호
○ (조치내용) 방역지침 의무화
* '학원'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은 기 안내한 「종교 등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방역수칙 가이드라인 정정 안내(2021.1.27.)에 따라 적절한 방역수칙 적용

바. 고위험사업장

○ (적용대상) 콜센터, 유통물류센터
○ (법적근거)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호
○ (조치내용) 방역지침 의무화

사. 교통시설

○ (적용대상) 대중교통시설(국제항공편 예외)
○ (법적근거)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호
○ (조치내용) 방역지침 의무화

아. 국공립시설 등

○ 국공립시설은 소관 부처·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한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철저하게 관리 운영
- 경륜·경정·경마장·카지노는 수용 가능인원의 20% 이내 제한 원칙, 이외시설(체육시설 등)은 수용 가능인원의 50%로 제한 원칙
○ (조치내용) 방역지침 의무화

자. 사회복지이용시설

○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고위험군 시설은 시간제 운영 및 사전예약제 전환 등 방역 강화
*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유행대비 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 및 단계별 운영 가이드라인 참조

차. 스포츠 관람

○ 30% 이내로 관중 입장

카. 목욕장업

○ 시설 면적 8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
○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
○ **사우나·한증막·찜질시설 운영 금지**

타. 직장근무

○ 공공기관은 기관별·부서별 적정비율(예: 전 인원의 1/3) 재택근무 등 권고 * 치안·국방·외교·소방·우편·방역·방송·산업안전·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(인력)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(인력)은 제외 - 출근한 인원은 시차출퇴근제 및 점심시간 시차 운영 적극 활용 - 회식·대면회의·출장자제 ○ 민간기관은 위와 같은 근무형태 개선 권고

3. 위와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1.5단계 및 특별방역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

○ 각 부서 및 구·군은 시설 관리·운영자 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방역수칙 미준수 시 벌금 및 과태료 등 벌칙이 부과되는 만큼 해당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, 관련 단체 등에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사업장에서 이용자 수칙 등을 게시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부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2본부(사회재난과)는 시설별 관리부서 및 구·군, 경찰 등과 합동점검단 등을 통해 이행상황 점검(실적 제출)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시설특성별 세부방역수칙(붙임4) 및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Q&A(붙임5)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1. 사회적 거리두기 1.5단계 실행방안 1부.
2.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변경 고시('21.2.15.) 1부.
3.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비교표('21.2.15.~2.28.) 1부.
4. 시설특성별 세부방역수칙(1.5단계 및 전국공통방역조치) 1부.
5.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Q&A 1부. 끝.

부산광역시장 [부산광역시장인]

수신자 본청, 소방재난본부, 직속기관, 사업소, 16개 구군 보건소, 공사공단, 구군, 부산 지역대학, 시의회, 출자출연기관(컨트리 제외), 부산교육청, 부산경찰청

전결 02/15

담당자 석태진 감염병총괄팀장 이정임 시민방역추진단장 이소라

협조자

시행 시민방역추진단-3409 (2021.02.15.) 접수 학생지원팀-417 (2021.02.16.)

우 4754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(연산동) / http://www.busan.go.kr
전화 051-888-3334 전송 051-888-3339 / tjseok@korea.kr / 공개